

[붙임]

## 전문약사 재인증 조건 및 가이드라인

1. 근거규정 : 전문약사제도 운영규정 제17조(자격갱신) 운영위원회에서는 매 7년마다 전문약사 자격을 소정의 심의 절차를 통하여 재인증한다.

2. 전문약사 재인증 조건

구 분	내 용
필수 조건	정회원(전문약사 자격증 취득 이후 재인증 시점까지 7년 이상 회원 유지)
선택 조건	<p>&lt;다음의 조건 중 하나 충족&gt;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병원약학분과협의회에서 인정한 관련교육을 7년간 28시간(연간 4시간 수준) 이상 이수토록 함 단, 재인증 관련교육은 약사 의무연수교육 8시간과는 별도로 이수해야 함</li> <li>• 해당분야 관련 논문을 7년간 2편 이상 병원약사회지 등에 발표하도록 함(공동저자 포함)</li> <li>• 해당분야 관련 논문을 7년간 1편 이상 병원약사회지 등에 발표하거나(공동저자 포함) 분과협의회에서 인정한 관련교육을 7년간 14시간 이상 이수토록 함 (①항과 ②항 절반씩 충족)</li> <li>• 전문약사 자격시험에 재응시하여 합격함</li> </ul>

3. 전문약사 자격시험 자격증 유효기간에 따른 경과규정

- ① 재인증 준비기간이 7년 미만인 경우 재인증 준비 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경과규정을 두기로 함
- ② 단, 재인증 조건으로 인정되는 교육이수와 논문발표는 재인증 기준 공지(2016년 1월 19일) 이후에 실시된 경우를 인정대상으로 함

취득 연도	전문약사 인원(명)	자격증 수여일	재인증 연도	재인증 준비기간	경과규정			
					①	②	③	
					관련교육 이수시간	관련논문 발표편수	관련교육 이수시간	관련논문 발표편수
2014	57	11.22	2021	약 6년	24시간	2	12시간	1

4. 전문약사 재인증 교육 인정 기준 및 범위

- ① 병원약학분과협의회에서 인정한 관련교육은 전문약사 자격시험 응시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하되 **병원 자체(원내) 교육은 인정하지 않음(약제부 자체 세미나 등은 인정되지 않음)**  
소속병원 주최 다수 참석 가능한 공개교육은 인정함(○○병원 주최 종양심포지엄 등)
- ② 병원약학분과협의회 병원약학과 기본교육 및 심화교육은 재인증 교육으로 인정함
- ③ 재인증 교육 중 온라인, 오프라인 교육은 차별없이 동일 시간으로 인정함

5. 재인증 논문 인정 기준 - 해당 분과 관련 학술지 모두 인정

- ① 논문발표는 게재(published) 시점 혹은 게재 확정된 시점을 기준으로 함  
(단, 재인증 기준이 발표된 2016년 1월 19일 이후 게재 혹은 게재 확정 논문부터 인정)

## 6. 정해진 연도에 재인증 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

- 정해진 연도에 재인증 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인증 신청기간에 사유를 기재하여 재인증 유예 신청서를 제출하면 전문약사제도 인증위원회와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거쳐 유예 여부를 결정함

## 7. 기타 유의사항

- ① 재인증 필수조건이 '정회원'이므로 2014년 전문약사 자격증 취득 후 2021년까지 휴직이나 이직 등으로 연속 7년간 회원신고를 하지 못한 회원은 공백이 발생한 해당 연도만큼 회비를 추가 납부해야 함
- ② 연수교육 이수나 논문 실적이 없는 경우는 2021년도 전문약사 자격시험에 재응시하여야 하고 이 경우 응시료는 기본 응시료(20만원)와 동일함